

<별표> 성폭력 관련 사건 가해자 징계양정 기준

적용대상	비위의 유형	양정기준		
		고의 有	중과실 有	경과실 有
교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포함)	강간 등 형사처벌 대상의 성폭력 및 성추행 행위	파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파면 ~ 정직(1~3개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농담이나 외모 관련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해임 ~ 감봉(1~3개월)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인사, 고용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개월 이상 정직	-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하는 행위	파면 또는 해임	-	-
학생	강간 등 형사처벌 대상의 성폭력 및 성추행 행위	출교	제적 또는 출교	정학 (유기, 무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제적	정학 또는 제적	유기 정학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농담이나 외모 관련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유기 정학	근신 또는 유기 정학	근신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하는 행위	제적 또는 출교	-	-